

신학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

제 1 조 (편입학 지원자격)

각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편입 전 대학원에서의 정규 등록 학기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. 단, 본교 내 타 대학원에서의 동일계 편입학은 2학기이상 수료자로 한정한다.

학 위 과 정	편 입 학 기	지 원 자 격	
		정규등록학기수	이 수 학 점
석 사 과 정	2	1학기 이상	6학점 이상
	3	2학기 이상	12학점 이상

제 2 조 (편입학 전형)

편입학전형은 신학대학원 학칙 제7조2(편입학)에 준하여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 3 조 (편입학생의 학점인정과 방법)

- ①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인정은 2학기 편입의 경우는 최대 6학점까지, 3학기 편입의 경우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인정은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.
- ② 단, 편입 전 대학원이 감리교단의 대학교(감리교신학대학교, 협성대학교)인 경우 교단필수과목에 대하여 ①항의 인정학점 외로 추가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(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)

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은 본 신학대학원에 편입한 학기에 따라 적용받는다.

부 칙

1. 본 내규는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